

1.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 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한 사실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2조)

- 1) 취업한 사실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2)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안 제3조)

- 1)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등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안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안 제9조)

알선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수급자에 대한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지원 등 구직능력향상 지원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마.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의 기간(안 제11조)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제2조(취업한 사실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확인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피보험기간일 것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직원 등 제1호에 따라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일 것

3.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기간일 것. 다만, 해당 기간 중에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영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말한다)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대한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① 영 제3조제4항제1호 후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목에 따른 일반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액
2. 나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다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일 것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4. 라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일 것
 5. 마목에 따른 승용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재산자료의 반영 시기 등 재산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취업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 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2.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신청자 및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3항,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에 동의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⑤ 제4항에 따른 동의서면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 법 제10조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불인정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유예 결정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제7조(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철회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4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4.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복지지원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에 제1항 각 호 중에서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는 알선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2. 수급자에 대한 동행면접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지원 등 구직능력향상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에 제1항제1호를 반드시 포함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의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법 제14조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중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법 제29조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제2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2. 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취업성공수당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절차) ① 법 제20조제5항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3. 그 밖에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자가 합의한 경우

② 법 제20조제7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4.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5.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③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로, 구직촉진수당의 결정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15조(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결정 통지)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중단 통지 및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 통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구직촉진수당등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의 수당수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수당수급계좌의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된 금융기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 기한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환을 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된 경우

나.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라.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법 제19조제2항의 지급액을 초과하고 수급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 등 수급자의 책임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환을 명한 금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행위자 본인이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수급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추가징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재심사 청구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주(週) 30시간 이상 일자리 (일용직 일자리 및 제8조제1항제4호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2. 제9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도중 법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나. 구직촉진수당 수급 도중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다. 참여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종료를 희망하는 날

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날

② 법 제29조제2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고시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14조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제18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2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법 제35조제7항 및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 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제한의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나.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종료일까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다. 위탁 제한은 해당 기관이 법 제35조 제3항 또는 제4항 따라 실시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제한의 효력을 갖는다.
- 라.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 마. 둘 이상의 위탁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 바. 같은 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탁 제한을 할 수 있다.
- 사. 같은 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탁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위탁 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위탁 제한을 할 수 있다.
- 아. 수탁기관이 지부·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3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탁계약 등이 지부·분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분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5항제1호	계약해지와 1년 위탁 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3)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35조 제5항제2호	계약해지 계약해지와 1년 위탁 제한 계약해지와 2년 위탁 제한
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 1) 위탁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지원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 선발한 경우 나)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수급자를 모집한 경우 3) 수급자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인원을 조작한 경우 나)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5항제3호	계약해지와 1년 위탁 제한 계약해지와 1년 위탁 제한 계약해지와 1년 위탁 제한 시정요구 시정요구
라.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계약해지

	제5항제4호	
마.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	법 제33조 제2항	계약해지
른 경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개월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②[]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	신청 자격 구분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18~34세)			
		[] 취업취약계층() * 2쪽 작성방법의 취업취약계층 표를 참고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합니다.			
③[]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자	신청 자격 구분	[] ①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②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③구직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00일 이상 취업			
		[] ①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②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①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18~34세) ②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조사가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등 거짓·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예산 범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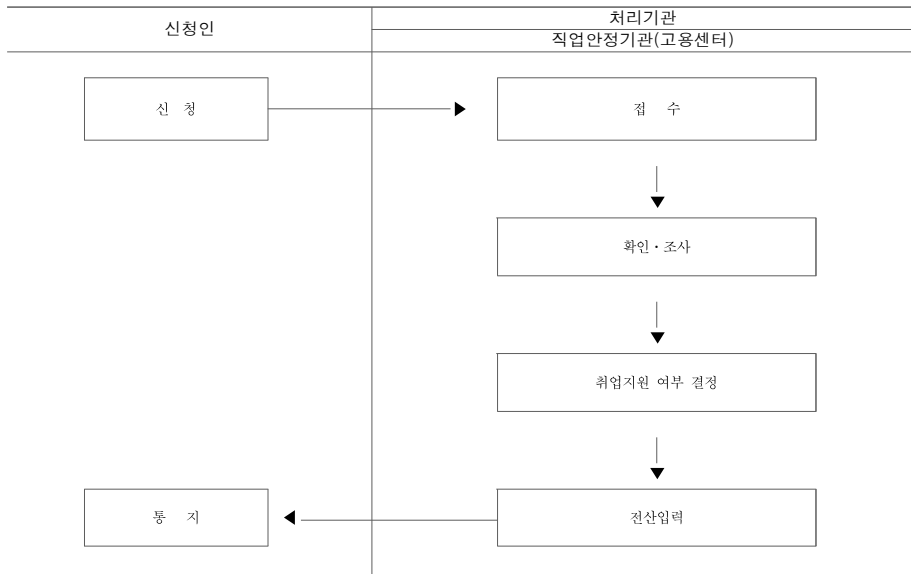
- ①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②번란은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시 앞쪽 해당부분([])에 “√” 표시를 하고 해당하는 신청자격구분([])에도 “√” 표시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은 아래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여성가장	⑤	결혼이민자
⑥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⑦	신용회복지원자	⑧	위기청소년	⑨	FTA 피해실직자 (근로자)	⑩	건설일용근로자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⑫	국가유공자 가구원	⑬	취업맞춤특기병	⑭	미혼모(부)·한부모	⑮	니트(NEET)족
⑯	기초연금수급자	⑰	차차상위계층	⑱	청년	⑲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⑳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이직자
㉑	산재 장애자	㉒	고용위기지역 등 이직자	㉓	기업활력제고법 참여자	㉔	고용조정실직자	㉕	영세 자영업자
㉖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③번란은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앞쪽 해당부분([])에 “√” 표시를 하고 해당하는 신청자격구분([])에도 “√”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신청인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내용

- 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2. 개인정보(DB) 수집의 목적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¹⁾를 제공받을 때 활용
-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²⁾를 제공받을 때 활용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때 활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메일주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 영구

본인은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³⁾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고를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민감정보 ⁴⁾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고를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⁵⁾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고를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제3자에게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 업무를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본인은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 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7.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

8.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DB)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온
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 「고용보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제2제1항 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지방자치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행정정보통신망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림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제 증명, 북한이탈주민확인증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기록
-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함(나대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에 관한 정보(장제 정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illegibl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내용

- 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

2. 개인정보(DB) 수집의 목적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 등 급여자격 인정, 급여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은 정보¹⁾를 제공받을 때 활용
-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은 정보²⁾를 제공받을 때 활용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때 활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 영구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³⁾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고를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민감정보 ⁴⁾ 제공(보유기관으 로부터 수집·제고를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⁵⁾ 제공(보유기관으 로부터 수집·제고를 포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제3자에게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자격 인정, 지급자 관리 업무를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법인·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7.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

- 취업지원 지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

8.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DB)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정보전산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 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법인·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 정도,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정보
-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에 관한 정보(장애 정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6) "동의자(신청인의 가구원)"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담일정	상담일시	
	상담장소	
	소 재 지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일정을 알려드리니, 위 상담일시에 해당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일정 변경 등을 원하시는 분은 최소 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수급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불인정 사유	☐ 근로능력 또는 구직의사가 없음	
	☐ 연령요건 ¹⁾ 미충족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²⁾ 미충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³⁾ 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	
	(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안내 사항

- 1) 취업지원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를 말한다. 다만, 「국직직위 기준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위기청소원(15세 이상 24세 이하) 및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하 69세 이하)의 경우 참여가 허용된다.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혼 중위소득 이하 “기혼 중위소득”이라 함은 100분의 1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18세 이하 34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는 가구원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혼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 3) 학력·경력·수익·교원, 육체적·정신적 장애, 장기적인 실업 또는 교육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공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불인정 사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함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¹⁾ 미충족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초과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통산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²⁾에 적합하지 않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³⁾ [] 그 밖의 사유	
(구체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예
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를 말합니다.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금액이 낮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업의 곤란함이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3) 제1차(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제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제3호(「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 는 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호(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제7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예 사유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신청인(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은 위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한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됩니다.
-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하고, 만약,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 유예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예신청 결과	[] 승인	유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불승인	사유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요건 비해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요건 비해당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요건 비해당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요건 비해당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요건 비해당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건 비해당
			(구체적 사유)

귀하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에 대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또는 불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됩니다.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하고, 만약,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측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고내용	재참여일	년 월 일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참여 사유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 만료 전 유예 사유 해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재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서

수급 자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급자격	인정받은 수급자격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인정일	년 월 일	
	철회일	년 월 일	
	철회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위와 같은 사유로 철회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수급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내용 (취업자용)	사업장명				
	취업일	년 월 일			
	소재지				
신청내용 (창업자용)	사업장명		업종		
	창업일	년 월 일			
	소재지				
수당수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취업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2. (신청인이 창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따라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 확인·조사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 구직지원 여부 결정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 통지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취업성공수당 [] 지 급 [] 부지급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결정내용	[] 지급 [] 부지급			
지급 결정액 및 지급회차	원(회차)		신청일	
부지급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수당의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②신청내용	신청사유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신청회차	회차	신청금액	원	
③수당수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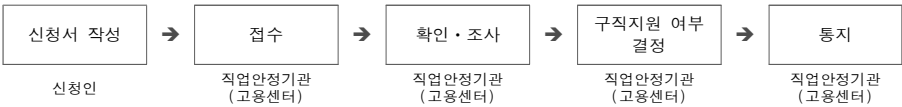
유의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②란은 해당하는 신청사유에 “√”로 표시를 하고 신청회차 및 1개월 단위의 고시금액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 본인의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구직촉진수당 [] 지급 결정 통지서
[] 부지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결정내용	☐ 지급 ☐ 부지급			
지급 결정액 및 지급회차	원(회차)		신청일	
부지급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〇〇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수당의 반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정지 또는 중단, [] 감액) 결정 통지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정지 및 중단	해당 기간(지급주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회차 지급주기)	
	총 정지 또는 중단 횟수	
	사유	
지급감액	해당 기간(지급주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회차 지급주기)	
	감액기간 중 지급할 금액	
	원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정지 또는 중단, [] 감액)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결정내용	처분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원	
	① 반환명령금액	
	원	
	② 추가징수금액	
원		
③ 납부할 금액(①+②)		
원		
④ 납부기한		
년 월 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고용관서에서 별도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결정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이유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만료된 경우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 참여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재참여하지 않은 경우 []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종단 결정을 받은 경우 [] 위 종료 이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제적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 종료 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